7 9 01 91 \$1	보도자료					•생산적 금융
금융위원회	보도	배포 후 즉시		배포	2018.12.19(수)	•포용적 금융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안 창 국(02-2100-2657)		담 당 자		송 병 관 사무관 (02-2100-2643)	
	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김 성 태(02-3774-9502)				김 기 경 부 장 (02-3774-9700)	

제 목 : 코스닥 제약 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

-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제약·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
- 금번 상장규정 개정은 「제약·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」(18.9.19)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관리종목'이 될 가능성이 커진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특례 마련을 위한 것으로써
 - * 4년연속 영업손실 시 관리종목 지정, 5년 연속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
 -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코스닥 제약·바이오 기업에 대해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면제
- 상장관리 특례 대상기업은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기업[®]으로서 재무[®] 및 기술평가등급[®] 요건을 충족한 코스닥 상장기업
 - 연구개발비 3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% 이상
 - ❷ 시가총액 1천억원,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서 상장 후 1년 경과
 - ❸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
 - ※ 거래소에 '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'를 제출해야 함
 - * 상장관리 특례 안내 및 상장기업의 신청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(일시) '18.12.26(수) 오후 4시 (장소) 한국거래소 본관1층 아트리움

I. 도입 배경

- □ 제약·바이오기업들은 지난 9월 발표한 **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***에 따라 **재무제표를 재작성**할 필요
 - *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를 표준화한 지침으로, 기존에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했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 필요 → 영업손실↑
 - 이에 따라, 일반 상장요건으로 코스닥에 진입한 제약·바이오기업 중 일부는 동 지침으로 인해 관리종목* 지정 가능성이 증가
 - *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시현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 (기술특례상장기업은 동 요건이 면제되며, 코스피 기업은 동 요건 없음)
 - ➡ 제약・바이오산업은 장기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, 동 지침으로 인해 R&D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할 필요

Ⅱ. 도입 내용

- □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제약·바이오 기업에 대해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
 - 연구개발비 수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일정 재무 및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제약・바이오 기업은 2018사업 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

【 상장관리 특례적용 요건 】

구 분	요 건				
대상 기업	•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수정(자산→비용)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코스닥 제약·바이오 기업				
연구개발비	■매출액대비 5%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(최근 사업연도)				
기술성 요건	■기술평가등급 BBB 이상				
재무 요건	■(시가총액) 1천억원 이상(최근 1년간 일평균) ■(자기자본) 250억원 이상(최근 사업연도말) ■(상장기간) 상장 후 1년 경과				

가.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

- ① (대상기업) 일반 상장요건으로 진입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오류 수정 (자산 → 비용)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기업
- ② (연구개발비) 매출액대비 5% 이상 또는 30억워 이상
 - * 코스닥 제약 바이오기업의 중간값
- ③ (기술성요건) 1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이상
 - * 기술특례상장 시 적용되는 기술평가등급(A 이상) 보다 완화 적용
- 4 (재무요건) 시가총액 1천억워, 자기자본 250억워 이상으로서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기업
 - * 이익미실현기업의 신규상장 시 최소요건에 준하여 설정

나. 적용방법

- ① 5개 사업연도(FY18~22) 동안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요건 미적용
 - FY23부터 FY26까지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FY27에 관리종목 지정 (장기R&D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부여)
 - * 동요건이 면제되더라도 3년간 2회 대규모(자기자본 50%↑) 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유지
- 2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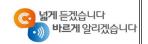
참 고 설명회 개최

일시 : '18.12.26(수) 오후 4시

◦ 장소 : **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본관1층 아트리움**

∘ 대상 : **코스닥 제약·바이오 기업 담당자**





1. 상장관리 특례 적용대상 기업은?

- □ 증권선물위원회의「제약·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」(~18.9.19)과 관련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제약·바이오기업 중에
- 2019년말까지 거래소에 ①「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」를 제출 하고 ②연구개발비 및 재무요건 등 충족이 확인된 기업 중 ③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기업



* (예) '19.12월 신청서 제출, '20.2월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확인 → 특례적용 대상 ○

2. 상장관리 특례 적용기간은?

□ 5개 사업연도(FY18~FY22)에 대해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적용하지 않음



3.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상장관리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?

□ 장기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「상장관리 특례 적용 신청서」를 제출하고 기술평가등급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종목 해제